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2017. 3. 6.  
사회건설위원회

### 1. 심 사 경 과

- 가. 발의일자 : 2017년 2월 22일
- 나. 발 의 자 : 윤준용 의원 외 8명
- 다. 회부일자 : 2017년 2월 22일
- 라. 상정일자 : 제19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 
제4차 사회건설위원회(2017. 3. 3.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윤준용 의원)

- 가. 제안이유
  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인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.
- 나. 주요내용
  - 유료방송 지원 대상(안 제3조)
  - 협약의 체결(안 제4조)
  - 지원내용, 지원신청 및 결정, 지원방법 등(안 제5조~안 제7조)
  - 통지의 의무(안 제8조)
  - 지원의 중지 및 환수(안 제9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권대광)

- 본 조례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양한 정보 채널을 제공하고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.
- 주요 내용
  - 지원대상은 1)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·의료급여수급자인 만 70세 이상 어르신으로 협약된 방송사의 유료방송 시청을 희망하는 자이며,
  - 지원내용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기본요금과 STB(Set Top Box) 사용료이며, 방송사와의 협약에 의한 경감액을 제외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.
  - 지원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하며 구청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와 신청자에게 통지함.
  - 주민등록 이전,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 상실, 사망 등의 사유로 중지되며, 허위 및 부정으로 지원받은 사람은 비용을 환수함.
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대한 사항은 2)사회보장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한 결과 사업 시행에 동의를 받았음.
- 이 조례안은 여가활동이 적은 만 70세 이상의 국민기초보장 수급자 어르신에게 경제적 부담 없이 다양한 볼거리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고 판단됨.
- 본 조례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서는 소요예산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우리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.

### 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- 
- 1) 조례안 제2조(정의)에서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  - 2)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, 기존 제도와의 관계,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

(윤준용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3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7년 2월 일

발 의 자 : 윤준용 의원 외 8명

## 1. 제안이유

경제적 부담 때문에 방송 시청권을 제약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편적인 시청권 및 생활안정을 보장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유료방송 지원대상(안 제3조)

나. 협약의 체결(안 제4조)

다. 지원내용, 지원신청 및 결정, 지원방법 등(안 제5조~안 제7조)

라. 통지의 의무(안 제8조)

마. 지원의 중지 및 환수(안 제9조)

### 3. 제정안 : “별첨”

### 4. 참고사항

#### 가. 관련근거

- 「방송법」 제2조(용어의 정의)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(급여의 종류)
- 「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」 제2조(정의)
- 「지방세 기본법」 제91조(압류)
-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 제31조(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),  
제32조(장애인·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)

#### 나. 예산조치 : 기획예산과 예산팀과 협의

(기획예산과-2046, 2017. 2.13.)

#### 다. 입법예고 (2017. 2. 7. ~ 2. 13.) : 의견 없음.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내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텔레비전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유료방송”이란 「방송법」 제2조의 텔레비전 방송 중 시청자와의 계약에 따라 수개의 채널단위·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.
2. 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”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를 말한다.
3. “방송사”란 「방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「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.

**제3조(지원대상)**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만 70세 이상의 어르신으로, 협약된 방송사의 유료방송 시청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.

**제4조(협약의 체결)**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제3조의

지원대상의 이용요금 지원을 위하여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협약의 목적·기간·해지·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지원내용)** ① 제3조의 지원대상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.

1. 제2조제3호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(Set Top Box) 사용료
2. 제2조제3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(Set Top Box) 사용료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용요금 중 방송사와의 협약에 의한 경감액을 제외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**제6조(지원신청 및 결정)** ① 이용요금 지원 신청은 이용희망대상자가 이용요금 지원 신청서(이하 "신청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확인 후 지원 대상자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대상으로 확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내용을 제4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지원방법 및 지원시기)** ① 이용요금은 방송사의 청구에 따라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해당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.

② 이용요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의 자격이 중지된 날이 속한 달까지 지원한다.

**제8조(통지의 의무)**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명단을 월 1회 이상 해당 방송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유료방송 제공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.

② 방송사는 지원대상자가 계약의 해지 등으로 이용요금의 지원이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**제9조(지원의 중지 및 환수)**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을 지체 없이 중지하여야 한다.

1. 영등포구 관외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하였을 때
2.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
3. 사망 또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된 때
4. 타인에게 유료방송 시청권을 양도하였을 때

② 구청장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지원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「지방세 기본법」 제91조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.

**제10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